

코로나19 외래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안내

안녕하세요. 포인트닉스입니다.

코로나19 외래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고시가 심사평가원에 7월 8일 게시되었습니다.

* 2022.7.11.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

*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7.25.부터 가능

**코로나19 수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
세부내용 파악후 프로그램 적용 등과 관련하여 재 공지를 드릴예정입니다.**

****심사평가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 관련 청구 방법 질의.답변****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							
1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○ 또한,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 상 유형) 및 MX999(기타내역)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 음 - 다만,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<명세서 작성 변경사항> <table>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명세서 작성구분</th><th colspan="2">코로나19 격리 통지</th></tr><tr><th>~'22.7.10.까지</th><th>'22.7.11.이후~</th></tr><tr><td>명세서 내역</td><td>코로나19 외래 진료비</td><td>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</td><td>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특정내역 구분코드</td><td>①MT043</td><td>"3/02" 기재</td><td rowspan="2">미기재</td></tr><tr><td>②MX999</td><td>"H/재택치료" 등 기재</td></tr><tr><td>③JX999</td><td>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</td><td>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</td></tr></table> *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※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(진찰료 등)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(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)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④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	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격리 통지		~'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②MX999	"H/재택치료" 등 기재	③JX999	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	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
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격리 통지																			
		~'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																	
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																	
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																	
	②MX999	"H/재택치료" 등 기재																			
	③JX999	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	"H/전환상담처방" 등 기재																		
2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	○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							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				
	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?	<table><tr><th>처방전</th><th>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</th></tr><tr><td>'조제 시 참고사항'란</td><td>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, ...)</td></tr></table>	처방전	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	'조제 시 참고사항'란	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, ...)
처방전	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					
'조제 시 참고사항'란	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, ...)					
3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(조제)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?	○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 로 발행함 - 이 경우,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 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(예: 코로나19, 코로나19확진, ... 등)				
4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 로비드 등)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원내 투약·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로 작성·청구함 - 이 경우,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“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”(보험급 여과-232호, 2022.1.12.)을 따름				
5 (의료 급여)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(타 진료내역 명세서)의 '상해외인'란에 “M”을 기재하여 청구함				